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72호 2025. 12. 11.(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예천군 조례 제2711호)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12호)
-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13호)
-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14호)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15호)

규 칙

-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64호)
-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65호)

훈 령

-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예천군 훈령 제473호)

고 시

- 하천점용 허가(변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57호)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인가 고시(가야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사업)(예천군 맑은물사업
소 고시 제2025-01호)

공 고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내성천 예
천지구 외 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천군 공고 제2025-163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1호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융자금 상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이하 “용
자수혜자”라 한다)는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나 보증보험사에서 발
행한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사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책임에 있어 연대보증인 의무 조항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 융자금의 상환 방식 개정(제6조의2제3항 삭제, 제5조제5호 신설)
 - 융자금의 상환책임에 있어 연대보증인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보증보험 증서 등으로 대체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2호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예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본관, 공급관, 내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약체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를 위한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산출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규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내관 시설비는 취약계층에 한하여 50% 이내로 정하며 그 지원액은 세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①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희망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현 주 소	(전화 :)		
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예천군	
		공사종점	예천군	
⑦배 관 연 장		m		
⑧도시가스공급확인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가스공급사업자 (인)		
「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개정이유

- 현행 도시가스 보조금 공급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실화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개정 : 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나.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변경(제5조 ~ 제6조)

- 지원대상 : 기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m당 일정 세대수 충족지역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전체로 확대
- 선정기준 : 보조금 지원 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라. 공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7조)

- 공급희망자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자 부담 완화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3호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이 조례에”를 “① 이
조례에”로 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1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사회, 문화,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석 지원
5.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7.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업
8.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9.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의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10. 그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제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장애인 복지 사업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 복지 사업내용 정비(제3조)
 - 사업명을 사업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상위법의 용어 변경으로 인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4호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30%” 이상을 “2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경로당 개·보수, 증축 시 마을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경로당 지원 자부담 비율 하향 조정(안 제5조)
 - (당초) 경로당 개·보수, 증축 시 마을 자부담 30% 이상
 - (변경) 마을 자부담 20% 이상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15호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투자유치협의회 구성 등)”을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예천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예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투자유치 담당 과장이”를 “경제농림국장,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협의회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3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5조의 제목 “(협의회 운영 등)”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정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3항 중 “제18조”를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공공기관 및 대학에 대한 지원)”을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기관 또는 대학이”를 “공공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4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로 하고, 제33조를 제34조로 하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27조를 제29조로 하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예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

제28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예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예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29조 앞의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중전의 제30조)제4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2조(중전의 제31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를 “제31조”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재정지원”으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35조(중전의 제34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7조(중전의 제36조) 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내 기업의 상수도요금 지원사업

제39조(중전의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제42조(중전의 제41조) 제1항제8호 중 “제38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4조(중전의 제43조) 중 “제32조”를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기업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함으로써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협의회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제3조 및 제3조의2, 제4조)

- 투자유치위원회로 명칭 변경(투자유치협의회 → 투자유치위원회)
-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및 상시 운영
-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

나. 국내기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제20조)

다. 산업단지 분양가 중복지원 범위 완화(제22조)

- 분양가 지원 시 안 제18조제1항제1호 부지매입비, 입지보조금에 한하여 중복 지원 불가하도록 규정

라.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원 확대(제24조)

마. 예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신설

(제27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 예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한 원활한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자 함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64호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천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예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분양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제5항”을 “제3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를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상호협

의하여”를 “상호협의하여 신청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31조제7항”을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실제 운영수입이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운영수입 보다 적어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중 “제3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5조”를 “제36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38조제2항”을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42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기준

대상요건 (분양면적 기준)	보조금 지급율	비고
6,600㎡ 미만	분양가의 최대 15%	
6,600㎡ ~ 16,500㎡ 미만	분양가의 최대 20%	
16,500㎡ ~ 33,000㎡ 미만	분양가의 최대 30%	
33,000㎡ ~ 99,000㎡ 미만	분양가의 최대 40%	
99,000㎡ 이상	분양가의 최대 50%	

◇개정이유

- 현행 시행규칙의 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기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제8조)

나.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기준 확대(제10조, 별표 1)

- 6,600m² 미만의 산업단지 필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기준 확대

다. 서비스사업 재정지원 대상 확대 규정(제13조)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65호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부군수”를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1호의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제31조제3항제3호의 “총무과”를 삭제한다.

별표 1,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제6조 제2항 관련)

구 분		본 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당직 사령	당직 반장, 반원	운전원	당직반원
평일	숙직	1명 (6급)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직	1명 (5급)	반장 1명(6급) 반원 1명		1명 (재택)
	숙직	1명 (6급)	1명	1명 (재택)	1명 (재택)

[별지 제10호서식]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 (제6조의2 관련)

소속	
직위(급)	
성명	
당직근무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직근무 면제사유	
기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의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총무과장 귀하

◇개정이유

-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하여,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당직근무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휴식권과 가족 돌봄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화(제3조, 제14조, 제31조, 별지 제10호서식)

나.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변경(별표 1)

- 본청 : 일직 4명 → 3명, 숙직 3명 → 2명 변경
- 읍면 : 일직 → 재택 변경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73호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이란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상황실 구성 및 임무

제3조(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는다. 다만,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는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 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간부 및 경상북도 상황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4.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 조치 지휘

5.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6.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장비의 관리 총괄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전파 및 보고

2.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송출

4.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5.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

6.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7.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8.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 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조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복무

제6조(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다만, 평일 야간 및 공휴일은 본청 당직실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4조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에서 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 인원 및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명절, 연말연시, 연휴기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근무: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시간이 종료했을 때(또는 다음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상황근무자에게 재난관리상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인계해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의 근무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주간: 재난안전상황실

2. 평일 야간 및 공휴일: 본청 당직실

④ 상황근무자는 당직근무, 지원근무 등에서 제외된다.

⑤ 상황근무자는 별표의 근무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⑥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8조(근무신고) 상황근무자는 근무를 시작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9조(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보고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부군수 및 군수에게 직접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서의 종류 및 작성 방법)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
2. 수시보고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

②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 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체계)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 및 장비관리

제12조(기록관리)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별표의 상황근무자 근무 수칙,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경상북도 재난안전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의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상황실에 재난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14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5조(보안관리)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7조(결원보충) 군수는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18조(현업 공무원 지정 등) ① 군수는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요건을 고려하여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산·통신 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상황근무자 근무 수칙(제7조제5항 관련)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2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상황근무자는 2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前) 상황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전 상황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정기: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작성
 - 수시: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최초-중간-최종)
4. 상황보고 및 전파
 - 군수, 부군수에게는 상황실장이 직접 보고
 -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또는 FAX 등을 활용하여 보고·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신:

시행일시: 20

접수일시: 20 :

발신:

(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 시:

2. 장 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 재산피해 :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

나. 동원사항

-

6. 지원 및 협조사항

- .

7. 향후 전망 및 대책

-

작성 방법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담당자	팀장	과장

년	월	일	요일
---	---	---	----

1. 근무자

주간	소속:	직급:	성명:	야간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2. 중점 관리사항

○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등 재난관리주관에서 지시한 중점 관리사항

3. 주요 상황 처리현황

일시		발신기관	보고수단	내용
접수	보고(전파)	수신기관		
00:00	00:00	00군	휴대전화	-
		재난안전상황실		
00:00	00:00	행정안전부	NDMS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4. 주요 재난상황 접수 및 조치사항

건명	접수시간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5. 기타(기상특보, 주요 언론사항, 특기사항 등)

○ TV, 인터넷뉴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 읍면 상황근무는 당직보고와 같음

※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정이유

-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력 제고 및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신규 설치·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상황실 운영 인력 규정 정비(제6조)

- 상황실 근무반 편성 :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직원 및 본청 당직근무자
→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

나. 근무 장소 및 복무 규정 정비(제7조)

- 평일 주간 상황근무자 근무 장소 : 사무실 → 재난안전상황실
- 상황근무자는 당직근무, 지원근무 등에서 제외됨

다. 보안관리 규정 신설(제6장)

- 문서 및 장비보안, 보안관리, 상황실 출입제한 내용 신설

라. 인사 및 후생복지 규정 신설(제7장)

- 결원보충, 현업공무원 지정, 교육·훈련, 근무환경 조성 등 내용 신설

마. 상황근무자 근무 수칙 준수사항 정비(별표)

- 지정 근무시간 10분 전 도착 → 20분 전 도착

하천점용 허가(변경)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 3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수(안전재난과장)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위 치	당초 : 예천군 예천읍 상동리 60-3번지 변경 : 예천군 예천읍 상동리 400-27번지
점용면적	1㎡
점용목적	공작물의 신축
사업개요	충적관정 설치
점용기간	2025년 12월 08일 ~ 2030년 12월 31일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1. 사업목적

- 용궁면 가야리, 풍양면 공덕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각종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편입시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공중보건위생 및 생활환경을 향상하기 위함.

2. 인가내용

연번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량	사업기간	계획처리구역 (km ²)	시 행 자
1	가야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궁면 가야리	2,946	오수관로 L=1.578km, 중계펌프장 1개소	2025. 11. ~ 2027. 11.	0.446 (당초 0.424, 편입 0.022)	예천군 (맑은물 사업소장)
2	낙상1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풍양면 공덕리	5,054	오수관로 L=3.45km, 중계펌프장 2개소	2025. 11. ~ 2027. 11.	0.523 (당초 0.436, 편입 0.087)	예천군 (맑은물 사업소장)

- 기타 관계서류는 예천군 맑은물사업소(054-650-637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고 제2025-1630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내성천 예천지구 외 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11.

예 천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4. 07. 05. ~ 2027. 06. 19.(1,080일)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내성천 예천지구 외 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금천,복계천: 경북 예천군 용궁면 ~ 문경시 영순면 일원 한천: 경북 예천군 개포면 ~ 예천군 호명읍 일원 취약배수구조물 : 반변천: 경북 안동시 용상동 ~ 안동시 임하면 일원 내성천 경북 문경시 영순면 ~ 예천군 호명읍 일원	○ 제방정비공 : L = 4,845m [금천, 복계천, 한천] ○ 취약배수시설공 : 15개소 [재가설 3개소, 차수보강 11개소, 제방보강 1개소] ○ 부대공 : 1식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하천공사1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104-3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내성천 예천지구 외 1개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339-4번지) T.054-652-3572, Fax.054-653-3573	2025.12.11. ~ 2025.12.25.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12.11. ~ 2025.12.25.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1과(☎055-212-0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사업의 종류	하 천 사 업		
사업의 명칭	내성천 예천지구 외 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의 위치	경북 예천군 용궁면 ~ 문경시 영순면 일원 경북 예천군 개포면 ~ 예천군 호명읍 일원 경북 안동시 용상동 ~ 안동시 임하면 일원 경북 문경시 영순면 ~ 예천군 호명읍 일원		
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예천지구 외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성명	주 소	
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9-5	49-10	전		1,230	131	설*원	예천군 용궁면 금남길 --	
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9-9		전		210	210	경상북도		전필
3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8-5	48-6	전		1,040	20	김*녀	예천군 용궁면 금남길 --	
4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8-4		전		129	129	경상북도		전필
5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844	844-1	도		1,160	62	국(건설부)		
6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6	46-2	전		1,984	108	이*락	예천군 용궁면 금남길 --	
7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1-6	371-9	도		504	294	예천군		
8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1-1		천		382	382	경상북도		전필
9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5-5		전		112	112	경상북도		전필
10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1-3	371-8	답		2,588	94	손*원	울산 남구 산업로613번길 29, --	
1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4-1		전		2,214	2,214	이*원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	전필
1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5-2		전		122	122	경상북도		전필
13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5-4		전		159	159	경상북도		전필
14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5-6		전		79	79	경상북도		전필
15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4-5		전		1,356	1,356	경상북도		전필
16-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4-2	34-8	전		3,186	20	김*익	안동시 경동로 191,--	편입
16-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4-2	34-7	전		3,186	98	김*익	안동시 경동로 191,--	편입
17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4-6		천		309	309	이*원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	전필
18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5		전		3,746	3,746	경상북도		전필
19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4-3		천		187	187	이*원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전필
20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9-1		임		51	51	전*현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	전필
21-1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9	379-4	임		18,812	16	소천서원관리소	예천군 용궁면 외무길--	편입
21-2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9	379-5	임		18,812	143	소천서원관리소	예천군 용궁면 외무길 --	편입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예천지구 외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성명	주 소	
22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7-1		잡		237	237	경상북도		전필
23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7	377-2	잡		2,067	110	정*일	문경시 중앙3길 --	
24-1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825-1	825-8	천		101,229	1,965	국(건설부)		
24-2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825-1	825-10	천		101,229	9,544	국(건설부)		
25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379-2		임		408	408	전*현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	전필
26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756-5		도		2,930	4	국(농림부)		미분할
27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199-2		답		80	80	경상북도		전필
28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199	199-3	답		3,388.40	23.1	이*우	대전 서구 청사로 65, 황실타운 --	
29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00-1		답		47	47	경상북도		전필
30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00	200-2	답		1,549.50	72.1	이*가	예천군 용궁면 무이서당길 --	
3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01-1		답		100	100	경상북도		전필
3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01	201-2	답		2,088.80	61.6	이*학	서울 강동구 고덕로 23길 --	
33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02-2		답		196	196	김*녀	예천군 용궁면 무이서당길 --	전필
34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02	202-4	답		2,823	86.6	김*녀	예천군 용궁면 무이서당길--	
35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02-3		답		142	142	경상북도		전필
36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202-1	202-5	답		995.8	36.8	김*녀	예천군 용궁면 무이서당길 --	
37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754-5	754-6	구		2,939	147.5	국(농림수산부)		
38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4-1	44-4	전		1,605	157	이*태	예천군 용궁면 금남길 --	
39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4-2		전		347	347	경상북도		전필
40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4-3		전		177	177	경상북도		전필
4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0-4	40-7	전		1,605	74	이*복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82-1, --	
4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0-6	40-9	전		1,046	36	이*복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	
43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0-5	40-8	전		3,444	357	엄*흠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예천지구 외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성명	주 소	
44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0-3		전		1,775	1,775	경상북도		전필
45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0-2		전		546	546	경상북도		전필
46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6-1		전		466	466	이*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55, --	전필
47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6-2		전		605	605	경상북도		전필
48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9-1	39-5	잡		1,214	30	김*호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49-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1	38-6	전		1,310	81	권*준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	
49-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1	38-7	전		1,310	102	권*준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	
50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4		전		4	4	경상북도		전필
51-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7-1	37-5	전		737	15	배*호	예천군 용궁면 금남길--	
51-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7-1	37-6	전		737	191	배*호	예천군 용궁면 금남길--	
5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7-4		전		577	577	경상북도		전필
53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9-3	39-6	전		454	6	김*호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	
54-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8-5		잡		87	87	언*흠	예천군 용궁면 읍부3길 --	전필
54-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김*호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	
55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8-3	388-7	잡		1,187	12	김*호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	
56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8-6	388-8	전		1,162	41	김*호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	
57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8-1		전		2,569		엄*흠	예천군 용궁면 금남길 --	미편입
58-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8-4		전		192	192	엄*흠	예천군 용궁면 읍부3길--	전필
58-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김*호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59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41-8		전		56	56	예천군		전필
60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23-2	623-3	도		5,326	33	국(건설부)		
6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0	380-1	도		165	16	정*병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8-2		전		618	618	경상북도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예천지구 외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성명	주 소	
63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9-4		잡		134	134	경상북도		전필
64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9-2		천		119	119	김*용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전필
65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9		천		645	645	경상북도		전필
66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3		전		94	94	경상북도		전필
67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8-2		천		112	112	권*남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전필
68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7-3		전		65	65	경상북도		전필
69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37-2		전		665	665	경상북도		전필
70-1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13-1	613-1	천		234,969	27,869	국(건설부)		
70-2	예천군 용궁면 금남리	613-1	613-10	천		234,969	2,514	국(건설부)		
134	예천군 영순면 왕태리	1357-13	1357-25	도		155	31	국(국토교통부)		
152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산58-2	산58-2	천		62	62	예천군		전필
153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산58		임		8,787		김*영	예천군 예천읍 남본1길--	미편입
154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455	455-1	전		674	69	권*옥	예천군 호명면 담암길--	
155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6-1	546-16	천		950,367	237	국(환경부)		
156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456	456-1	답		5,131	18	장*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73-17--	
157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80	580-1	구		3,312	141	국(농림부)		
158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465	465-1	답		4,879	178	장*현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	
159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466-2	466-3	답		2,397	230	장*현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	
160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469-1	469-8	천		3,914	3,159	국(건설부)		
161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470	470	천		209	209	경상북도		전필
162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470-2	470-2	천		1,758	1,758	경상북도		전필
163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469-2	469-9	천		2,949	153	국(건설부)		
164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471-4		제		31	3	국(건설부)		미분할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예천지구 외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성명	주 소	
165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470-1	470-1	제		407	407	경상북도		전필
166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82	582	도		279	279	국(건설부)		전필
167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18	518-1	제		467	14	국(건설부)		
168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19	519	천		510	510	국(건설교통부)		전필
169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19-1	519-2	제		535	383	국(건설교통부)		
170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20	520-1	제		138	88	국(건설부)		
171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525	525-3	답		3,244	31	장*교	예천군 호명면 담암길 --	
172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21	521	제		600	600	국(건설부)		전필
173-1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6-9	546-17	제		17,646	7,062	국(환경부)		
173-2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6-9	546-18	제		17,646	241	국(환경부)		
173-3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6-9	546-19	제		17,646	257	국(환경부)		
174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27	527	제		356	356	국(건설부)		전필
175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28	528	제		919	919	국(건설부)		전필
176-1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0-4	540-5	구		2,270	2,080	국(농림축산식품부)		
176-2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0-4	540-6	구		2,270	79	국(농림축산식품부)		
177-1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527-2	527-2	제		30	30	장*흠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전필
177-2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이*우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177-3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장*기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177-4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김*학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	
178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29	529	제		334	334	국(건설부)		전필
179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30	530	제		111	111	국(건설부)		전필
18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2-2	652-2	도		5,907	5,907	국(건설부)		전필
18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1-3	51-3	제		800	800	국(건설교통부)		전필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예천지구 외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성명	주 소	
18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1-2	51-2	도		1,230	1,230	국(건설교통부)		전필
18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1-1		제		694	205	국(건설교통부)		미분할
18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0-4		제		182	65	국(건설교통부)		미분할
18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0-2	50-2	도		205	205	국(건설교통부)		전필
18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2-1	52-1	도		215	215	국(건설교통부)		전필
18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2-2	52-2	천		836	836	국(건설교통부)		전필
18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3-4	653-4	구		397	397	국(농림부)		전필
18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79-11	179-11	구		1,939	1,939	국(농림부)		전필
19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3-1	53-1	도		152	152	국(건설교통부)		전필
19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3-2	53-2	제		916	916	국(건설교통부)		전필
19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6-1	56-1	도		225	225	국(건설교통부)		전필
19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6-2	56-2	제		1,584	1,584	국(건설교통부)		전필
19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5-3	55-3	도		146	146	예천군		전필
19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4	654-7	천		133,336	100,940	국(건설부)		
19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8-2	58-2	도		433	433	국(건설교통부)		전필
19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7-1	57-1	도		192	192	국(건설교통부)		전필
19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7-2	57-2	천		1,055	1,055	국(건설교통부)		전필
19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9-4	59-4	제		542	542	국(건설교통부)		전필
20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59-3	59-3	도		274	274	국(건설부)		전필
20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51-4	151-4	천		165	165	국(건설교통부)		전필
20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51-3	151-3	제		384	384	국(국토해양부)		전필
20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51-6	151-6	제		139	139	국(건설교통부)		
20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8-4	148-4	제		331	331	국(건설교통부)		전필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예천지구 외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성명	주 소	
20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8-2	148-2	도		407	407	국(건설교통부)		전필
20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8-1	148-1	천		73	73	국(건설교통부)		전필
20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3-4	143-4	제		549	549	국(건설교통부)		전필
20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99-4		제		123	46	국(국토해양부)		미분할
20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3-1	143-1	도		169	169	국(건설교통부)		전필
21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3-2	143-2	제		231	231	국(국토해양부)		전필
21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2-4	652-4	도		1,807	1,807	국(건설부)		전필
21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3-3	143-3	천		972	972	국(건설교통부)		전필
21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3-5	143-5	도		60	60	국(건설교통부)		전필
21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4-1	144-1	도		149	149	국(건설교통부)		전필
21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00-10		제		29	29	국(국토해양부)		전필
21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4-2	144-2	대		878	878	최*배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	전필
21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4-3	144-3	대		87	87	최*배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	전필
21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6-2	146-2	제		46	46	국(건설교통부)		전필
21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00-20		제		54	31	국(국토해양부)		미분할
22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2	142	제		93	93	국(건설교통부)		전필
22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1-1	141-1	천		23	23	국(건설교통부)		전필
22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1-2	141-2	도		76	76	국(건설교통부)		전필
22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1-3	141-3	답		104	104	정*주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전필
22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1-4	141-4	답		15	15	정*주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전필
22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2-5	652-5	도		28	28	국(건설부)		전필
22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0-1	140-1	천		20	20	국(건설교통부)		전필
22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0-2	140-2	도		43	43	국(건설교통부)		전필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예천지구 외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성명	주 소	
22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0-3	140-3	답		43	43	정*주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전필
22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9-5	139-5	답		51	51	이*화	예천군 예천읍 흑응로 --	전필
23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9-8	139-8	답		91	91	이*화	예천군 예천읍 흑응로--	전필
23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9-3	139-3	도		60	60	국(건설교통부)		전필
23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9-1	139-1	임		342	342	이*화	예천군 예천읍 흑응로 --	전필
23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00-9		천		86	5	국(국토해양부)		미분할
23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79-14		구		160	119	국(농림부)		미분할
23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9-7	139-7	임		116	116	이*화	예천군 예천읍 흑응로 --	전필
23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8-1	138-1	제		942	942	국(건설교통부)		전필
23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8-2	138-2	도		209	209	국(건설교통부)		전필
23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8-3	138-3	제		330	330	국(건설교통부)		전필
23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8-4	138-4	잡		50	50	김*한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	전필
24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9-6	139-6	임		210	210	이*화	예천군 예천읍 흑응로 --	전필
24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38-5	138-5	도		198	198	국(건설교통부)		전필
24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1-8	61-8	도		12	12	국(건설부)		전필
24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1-6	61-6	천		13	13	국(건설교통부)		전필
24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0-1	60-1	천		1,009	1,009	국(건설교통부)		전필
24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1-7	61-7	천		164	164	국(건설교통부)		전필
24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0-2	60-2	천		22	22	국(건설교통부)		전필
24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1-3	61-3	천		61	61	국(건설교통부)		전필
24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2-2	62-2	제		913	913	국(건설부)		전필
24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2-3	62-3	천		495	495	국(건설부)		전필
25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7-4	657-4	구		496	496	국(농림부)		전필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내성천 예천지구 외1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전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성명	주 소	
25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7	65-7	제		387	387	국(건설교통부)		전필
25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8	65-8	제		387	387	국(건설교통부)		전필
253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60	660	도		903	903	국(건설부)		전필
25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6-2	66-2	제		205	205	국(건설부)		전필
25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4-1	654-1	제		1,500	1,500	국(건설교통부)		전필
256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9-4		도		1,835	477	국(건설부)		미분할
257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79-10		도		233	3	국(건설부)		미분할
258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79-3		답		1,481	9	국(국토교통부)		미분할
259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79-4		구		7,279	56	국(농림부)		미분할
260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80-3	80-3	제		1,601	1,601	국(건설교통부)		전필
261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7-1		구		85,432	127	국(농림부)		미분할
262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4-2	654-2	제		78	78	국(건설교통부)		전필
263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5-3		제		104	6	국(건설부)		미분할
264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4-4	654-4	제		112	112	국(건설부)		
265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654-3	654-3	제		168	168	국(건설교통부)		전필
266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608-15		제		15,910	517	국(건설교통부)		미분할
270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6-1		천		954,258	234	국(환경부)		미분할
271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6-9		제		17,646	239	국(국토교통부)		미분할
272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0-4		구		2,270	72	국(농림축산부)		미분할
273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16-1		구		202	30	한국농어촌공사		미분할
274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6-9		제		17,646	517	국(건설교통부)		미분할
275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540-1		구		5,084	47	국(농수산부)		미분할